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온실가스 배출량을 '18년 대비 60.2%~62.8% 감축하는 2035 수송 부문 NDC 목표 이행을 위해, 전기·수소차의 보급 동력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. 이에 구매보조금 외에도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. 전기·수소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운수사업자에게 장기·저리의 정책 용자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의 신속한 전기·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무공해차 구매용자 사업은 이러한 다각화된 지원방식을 구체화한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러한 정책 용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용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(안 제66조 제4항)

- 1) 법 제58조제3항제1호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

자금의 보조에 대해서는 영 제66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
공단에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2) 그러나 자금의 용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
두고 있지 않아,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.

3) 이에 자금의 용자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그 업무를
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업무처리 후 관련 내용을 기후에너지
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(안 제66조제5항)

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그 처리 결과와
내용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
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협의 중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,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”으로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용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6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</u>
④ <u>한국환경공단,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</u>	⑤ ----- <u>한국환경보전원,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</u> ----- ----- <u>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⑤ · ⑥ (생 략)	⑥ · 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884